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2일 05시 22분



목차

목차	2
공지사항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2024.03.28 조회수 108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 최영미 연락처 061-659-331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구분	현행	개정
미성년자 신청시 발급기관 확대 (제3조제2항)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읍·면·동·출장소장
신분확인 방법 (제4조제1항)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단,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 2024. 10. 2. 시행예정
용도 구분 (제5제3항,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발급 수수료 (제14조제1항)	1통에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제14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선순위자인 “부” 또는 “모”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 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규정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서식)	< 신설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에 “ <u>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u> ” 라는 안내문구 추가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홍보자료.jpg (22 hit/ 356.8 KB) ↓

[미리보기](#)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Yeosu Web Contents



여수시